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12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절차 이행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4508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12595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 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0.(또는 2013. 9.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원고는 망 C의 동생이고, 피고는 망 C의 또 다른 동생인 D의 아들이다.
- 2) 2013. 3. 4. 망인이 피고를 양자로 들이는 내용의 입양신고가 마쳐졌고, 그 후 망인은 2013. 8. 28. 사망하였다.
- 3)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입양의 효력 및 상속에 관한 분쟁

- 1) 원고와 피고는 망인이 피고를 입양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고는 2013. 9. 7. 원고에게 "피고는 2013. 8. 28.에 돌아가신 고모 망 C에 대한 상속의 처리와 관련하여 유일한 생존 형제인 작은아버지 원고에게 그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인으로 하는 가능한 법적 절차를 파악하여, 상호 진행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후의 모든 상속재산 배분의 권한을 작은아버지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류에 날인하여 드립니다. 본 각서를 E 또는 F(원고의 아들들)과 함께 2013. 9. 9.에 공증한다."라는 내용의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2) 그 후 피고는 2013. 9. 11. 위 2013. 9. 7.자 상속처리에 관한 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명 등부 2013년 제2284호로 위 확인서를 인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확인인(피고)은 망 C의 단독 재산상속인인바, 위 망인이 2013. 8. 28.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등기 취득할 수 있으나, 피고는 위 상속재산을 곧바로 등기 취득하지 않고 숙부이신 원고와 취득 및 제반절차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까.

위 취득 및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숙부 원고의 의견과 뜻을 존중하도록 할 것이며,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적인 권리가 있지만 피고와 숙부 원고 사이에 원만한 의견이 교환되는 상태에서 이를 상당 부분 원고에게 부여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의 자녀에게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배분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위 부동산 및 여기에서 확인 및 특정되지 아니한 동산, 현금, 예금 등에 대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그리고 취득 및 분배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세금과 비용에 관련하여는 별도로 상의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까.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14. 5. 21. 서울가정법원에 위 2013. 3. 4.자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입양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4드단31274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9. 11. 항소기각 판결(서울가정법원 2014르2793호)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2. 3.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5므3721호)이 선고되어 2016. 2. 11.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16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망 C의 양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는 2013. 9. 7. 및 2013. 9. 11. 원고와 상의하여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후 2013. 9.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위 2013. 9. 20.자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2013. 9. 11.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위 2013. 9. 20.자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재산 분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원고의 상속재산 분배권 행사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면 2013. 9. 11.자 합의에 따라 적어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9. 20.자 재산분배에 관한 각서에 서명, 날인하지도 않았고, 위 각서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2013. 9. 11.자 합의는 ①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② 원고가 피고를
망인의 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가 망인의 양자라는 점을 다투었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③ 원고가
입양무효의 소에서 피고의 양자 지위를 다투다가 피고가 망인의 양자로서 단독상속인임을 전제로
2013. 9. 11.자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거나, ④ 별도의
상속재산 분배를 위한 절차를 협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피고의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상속재산 분배 협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013. 9. 11.자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또는 상당한 범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2013. 9. 20. 상속재산 분배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7. '상속재산 분배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재산 상속에 관한 절차를 원고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취지의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3. 9. 11.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13. 9. 20. 원고와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그 아들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배분한다는 취지의 재산배분에 관한 각서 초안을 제시한 사실, 당시 피고는 위 2013. 9. 20.자 각서의 내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 측에 "세금 관계를 정확히 알아봐야 돼요.", "절 믿고 제가 할 테니까요. 내가 일단 알아볼게.", "이대로 제가 시행할게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9, 11 내지 15호증, 을 제9, 15,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원고의 처인 G, 원고의 아들인 E, F(이하 원고와 원고의 처인 G, 원고의 아들인 E, F을 모두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한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가 망인의 양자가 된 것에 대하여 집안 어른인 원고에게 미리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배분을 요구하였다.

② 2013. 9. 20.자 각서는 원고와 원고의 장남인 E이 상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그 내용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2013. 9. 20.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위 각서를 제시받고 서명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다.

③ 피고는 세금 관계를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 측이 제시한 2013. 9. 20.자 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3. 9. 20. 이후 원고 측과 접촉을 피하면서 연락을 단절하였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3. 9. 20.자 재산 배분에 관한 각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3. 9. 20.자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피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위 각서의 내용대로 재산을 배분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3. 9. 20.자 각서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위 각서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가 2013. 9. 20. 당시 위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원고 측에 세금 관계를 정확히 알아봐야 된다고나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집안 어른인 원고와 원고의 처, 아들들이 위 각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언급하거나 재산 분배에 관한 확답이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설령 피고가 2013. 9. 20. 위 각서의 내용대로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위 각서에 날인하지 않은 이상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5조), 피고는 2013. 9. 20. 이후 원고 측과 연락을 단절하고 상속재산의 배분을 거절하여 그 증여의사를 해제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5) 따라서 2013. 9. 20.자 상속재산 분배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9. 7.자 및 2013. 9. 11.자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7. '상속재산 분배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재산 상속에 관한 절차를 원고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취지의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3. 9. 11.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가.항의 법리에다가 기초사실 및 갑 제2, 6, 9호증, 을 제20,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9. 7.자 및 2013. 9. 11.자 약정은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망인의 양자로서 정당한 상속인으로 원만히 인정받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원고 측에 양도하는 합의에 응하겠다는 취지, 즉 별도의 상속재산 분배 협의를 하기 위한 절차를 합의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나 2013. 9. 11.자 확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처분행위를 한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나 2013. 9. 11.자 확인서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호 진행하는 것을 약속', '상의하여 처리', '의견과 뜻을 존중', '원만한 의견을 교환'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협의를 예정하고 있다.

③ 뿐만 아니라 위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아들인 E은 "진행하는 것을 약속, 근데 진행이 안, 진행이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문구가 이상하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큰 의미를 제가 두고 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상호'라는 말 있죠?

..... 여기 '상호'가 들어가야 되네. '상호', 상호 진행하는 것을 약속하고....

"라고 말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그 협의가 중단되는 것도 고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를 거쳐 분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를 공증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작성된 2013. 9. 11.자 확인서도 동일한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④ 비록 위 2013. 9. 7.자 상속 처리에 관한 각서 및 2013. 9. 11.자 확인서에서 '배분권한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은 원고의 상속재산 분배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문언을 원고에게 피고의 상속재산에 관한 일방적인 분배권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9. 20.자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그 이후 원고 측과 연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 측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입양의 효력 및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다툰 이상 피고가 망인의 양자로서 정당한 상속인으로 원만히 인정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2013. 9. 7.자 및 2013. 9. 11.자 약정은 더 이상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며,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 일부를 분배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순히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점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2016. 7. 20.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및 상임조정위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3. 9. 11.자 상속재산 분배 합의에 따라 원고가 행사한 상속재산 분배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1.자 약정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라도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3. 9. 11.자 합의는 원고와 피고가 상속재산 분배의 내용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도 없다].

4) 따라서 2013. 9. 7.자 약정 및 2013. 9. 11.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전부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 또는 상당한 범위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신혁재

판사 백승준

판사 배인영

별지